

[별표 3] <개정 2012.2.8>

신체검사 분담업무의 구분 및 담당자(제4조제1항 관련)

구분	신체검사업무	담당자
1	신체등위의 판정	수석징병전담의사, 수석징병검사전문 의사, 수석군의원, 징병전담의사, 징병 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원
2	시력·곡광도 검사 그 밖의 안과검 사	
3	청력·청기·비강·구강 및 인후검사	
4	관절운동검사	
5	일반신체구조검사	
6	언어·정신·피부 그 밖의 신체검사	
7	신장·체중의 측정	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직원(신체 검사를 군병원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병원의 부사관 및 병)